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검 토 보 고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92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개관	4
2. 법 제정 필요성 여부 검토	5
3.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8. 11.
3. 회 부 일 : 2025. 8.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환경위기, 감염병 확산, 사회 양극화 등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자발적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시민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민사회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 사회 간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경제적·사회적 현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 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의 조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 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각 시·도에 지방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민사회재단을 설립함(안 제12조).

바.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지역시민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개관

제정안은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촉진과 정부-시민사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14개 조문과 2개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조문 체계 》

조문 내용		비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	
제5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무총리가 3년마다 수립,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매년 수립, 국무총리에게 추진실적 보고
제7조	시·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시·도지사가 3년마다 시·도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도 시민사회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
제8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9조	시민사회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기본계획 등 심의·조정 40명 이내(위원장 2명), 민간위원 중 위원장 호선, 사무국 설치
제10조	시·도 시민사회위원회	시·도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요청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파견
제12조	한국시민사회재단의 설립	정부는 필요 경비 출연 또는 보조
제13조	시·도 및 자치구 시민사회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도 시민사회지원센터 설치 운영(강행) 자치구 시민사회지원센터 설치·운영(임의)
제14조	시민사회활성화 기반 조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근거
부 칙		
제1조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제2조	재단의 설립준비	국무총리는 30일 이내 5명 이내 설립위원 위촉하여 시행일까지 설립등기 완료

2. 법 제정 필요성 검토

최근 복잡한 사회·경제적 현안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정부와 시장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 복지, 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NGO 등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이러한 시민사회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2003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통해 관련 사항을 관리해 왔으나, 동 위원회는 2022년 10월 4일 폐지되었음.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관련 법령 연혁 》

제명	제정일 (폐지일)	제정이유	비고
시민사회발전 위원회규정	2003. 8. 22. (2013. 8. 22.)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연구·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한시적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국무총리 훈령
시민사회발전 위원회규정	2013. 8. 22. (2020. 7. 22.)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연구·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의 자문기구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제명	제정일 (폐지일)	제정이유	비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2020. 5. 26. (2022. 10. 4.)	정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 행하도록 하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는 등 정부 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 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으로써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간의 공익 증진 및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적 성장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건강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제정안 시행에 따라 시민사회위원회, 한국시민사회재단, 시·도 시민사회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5년간(2027~2031년) 총 31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장기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62	0	0	66	0	128	26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120	120	120	120	120	600	120
시·도 시민사회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0조)	120	120	120	120	120	600	120
한국시민사회재단 설립 (안 제12조)	2,379	2,379	2,379	2,379	2,379	11,895	2,379
시·도 시민사회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3조)	3,577	3,577	3,577	3,577	3,577	17,885	3,577
합 계	6,258	6,196	6,196	6,262	6,196	31,108	6,222

주: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 및 협력 강화, 시민사회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가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방안 정책연구”가 진행 중이고, 이에 따라 발의된 동법의 시민사회재단과 지역시민사회지원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및 지역지원기관 등을 내용으로 포함하여 (가칭) 「시민참여와 숙의 공론 및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법」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정책연구 진행 경과에 따라 차후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조직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민 주도의 재단설립 및 국가 재정지원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가. 정의(안 제2조)

제정안은 공익활동, 시민사회, 시민사회단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사회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을 위하여 시민, 법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의 목적이 아닌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단체”란 시민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정안은 “공익활동”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민·법인·단체가 자발적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행하는 활동으로, “시민사회”를 이러한 공익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시민사회단체”를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의 해석 및 적용상 핵심적인 용어를 적절하게 선별하여 정의한 것으로 보임.

나.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 촉진과 시민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해당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시행계획’(매년)을, 시·도는 3년 주기의 ‘시·도계획’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5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공익활동과 시민사회 제반 분야에 대한 현황, 정책 및 제도 여건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중점 과제 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5.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구축·강화 방안 6.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과 공익활동 증진 지원 방안 7.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9조에 따른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9조에 따른 시민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시·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3. 시·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구축·강화 방안
5. 그 밖에 시·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정안

- ③ 시·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0조에 따른 시·도 시민사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시·도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국무총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간의 협력과 시민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3년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매년 '시행계획'의 수립을, 시·도지사에게는 3년 주기의 '시·도계획'과 '시행계획'(매년)의 수립을 각각 의무화하고 있음.

2022년 10월 폐지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도 정부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각 시·도에는 시·도계획 수립을 권고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제정안'과 '대통령령(폐지)' 비교》

구분	제정안(법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기본계획 (제5조)	국무총리가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의무)	정부(국무총리 총괄)가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의무)
기본계획 주요내용 (제5조)	목표 및 추진방향, 현황, 중점과제, 재원 규모·조달, 민관협력, 지방계획 연계 등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재원 규모·조달, 민관협력, 지방계획 연계, 교육·홍보, 국제협력 등
시행계획 (제6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행계획 매년 수립(의무), 국무총리 점검, 시민사회위원회 심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행계획 매년 수립(의무), 시민사회위원회 심의
시·도계획 (제7조)	시·도지사 시·도계획 3년마다 수립(의무), 시·도 시민사회위원회 심의, 시·도 시행계획 매년 수립(의무)	시·도지사 시·도계획 수립(재량), 시행계획 미규정
협조의무 (제8조)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수립·시행 시 관계 기관·지자체·법인·단체 협조요청 가능	-

다만, 제정안은 시·도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 절차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1개 시·도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실제 시행 중이라는 점과,¹⁾ 지역 실정 및 특성을 반영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1) 2025년 11월 5일 기준, 9개 시·도가 관련 조례 시행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핵심 사항은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되, 세부 운영지침 및 절차 등은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시민사회위원회 설립 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정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시·도에는 관할 지역의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시·도 시민사회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9조(시민사회위원회) 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관련 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6.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 간사위원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정안

1. 민간위원: 시민사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계부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관계부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도 시민사회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시·도 시민사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정안은 제9조에서 ‘시민사회위원회’의 설치 목적, 소속, 주요 기능, 위원 구성 및 임기, 실무·전문위원회, 사무국, 관계부처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어 제10조는 각 시·도에 ‘시·도 시민사회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가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과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도 제정안과 같이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바 있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심의·조정 및 중앙·지방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해당 조항들의 입법 필요성은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 시민사회위원회 관련 ‘제정안’과 ‘대통령령(폐지)’ 비교》

구분	제정안(법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위원회 설치 (제9조)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관련 심의·조정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관련 심의
심의·조정 범위 (제9조)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력 관련 정책의 제도개선 정부-지자체 간 역할 조정 정부-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등	기본·시행계획 수립·조정 법령·제도의 정비 및 정책제안 자율성·공공성·투명성 강화 기부·나눔 확산 민관 협력체계 구축 재원확보·교육·국제협력 등

구분	제정안(법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구성 및 임명 (제9조)	위원장 2명 (국무총리, 민간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2명, 간사 1명 포함 40명 이내 민간위원 임기 2년(1회 연임) 정부위원 대통령령 위임	위원장 1명(민간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국무총리실 지정) 포함 40명 이내(민간위원 5/3 이상) 민간위원 임기 2년(1회 연임, 보궐은 잔임기간) 정부위원 명시 ²⁾ 해촉사유: 심신장애·직무태만·자진사임 등
실무/전문 위원회 등 (제9조)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관계부처협의회(고위공무원단), 사무국 설치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 관계부처협의회(고위공무원단)
회의·운영	대통령령 위임	회의 소집, 임시·서면, 분기별 개최, 의결정족수 등 규정
시·도 위원회 (제10조)	시·도 시민사회위원회 설치(의무) (세부사항 조례로 위임)	시·도 시민사회위원회 설치(재량) (설치 여부 조례로 결정)
행정지원 (제11조)	위원회·지방위원회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공무원 파견 요청 가능	위원회 사무 국무총리비서실 지원, 필요시 공무원 파견·겸임

다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제정안은 위원 구성, 임기, 위원장 선임 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부위원장 선임 방법과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위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므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둘째, 제정안은 민간위원 위촉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장이 2명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 위촉권이 각 위원장에게 공동으로 주어지는지, 국무총리에게만 부여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 적용상 모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촉권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제정안은 회의 운영 관련 절차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위임하고 있는바, 위원회 소집, 의사·의결정족수 등 위원회의 주요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직접 규정한 후, 세부 운영규정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라.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재단 설립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제정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민사회재단’을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시민사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2조(한국시민사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민사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시·도 시민사회지원센터 및 시·군·구 시민사회지원센터와의 연계·협력 사업 2. 제14조에 따른 시민사회 기반조성 사업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⑦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⑧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제정안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도 및 자치구 시민사회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는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시·도 시민사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공익활동 증진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하여 자치구시민사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도 및 자치구 시민사회지원센터(이하 "지역시민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공익활동의 활성화
3. 지역 공익활동의 홍보 및 지원
4. 지역 공익활동 관련 우수 사례 조사·연구
5. 그 밖에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지역시민센터는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단과 연계·협력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시민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시민사회단체 관련 현황 및 통계조사

제정안 제12조는 ‘한국시민사회재단’의 설립과 그 조직·사업·재정 지원 등 기본적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제13조는 광역자치단체의 ‘시민사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설치를 재량에 맡기는 한편, 각 지역시민센터의 사업범위와 협력·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시민사회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의 지역별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재단 및 지역시민센터의 설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제정안은 한국시민사회재단이라는 특수법인³⁾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법인의 설립·운영 과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감독 및 감사권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정안은 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은 규정하고 있으나, 감독에 관한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적 재원의 투명성 확보 및 재단 운영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감독 관련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이미 기존 개별 법률⁴⁾에 따라 보조금, 교육·훈련,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3) 특수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

므로, 별도의 재단 신설·운영이 기존 지원체계와 중복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제정안은 각 지역 시민사회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센터의 구체적인 설치·운영 절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지 않아, 지역별 특성과 자치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고 보임.

셋째, 제정안 제13조제5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시민센터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나, 하위 각 호에서는 시민사회 관련 조사·연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제5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사업들이 열거되어 있는바,

과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연구기관 지정·운영’ 조항에 유사한 내용이 존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⁵⁾ 제정안 제13조제5항 각 호는 실무적으로 발생한 편집 오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문의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임.

5)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①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정부위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시민사회 관련 현황·통계 조사
5. 시민사회 관련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연구
6.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

마. 시민사회활성화 기반 조성(안 제14조)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민사회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4조(시민사회활성화 기반 조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 관련 현황조사 및 통계구축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3.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사례 발굴, 축적 및 홍보 4. 시민공익활동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5. 시민공익활동 참여자의 사회적 존중 및 인정체계 구축 6. 시민사회 비영리일자리 구인·구직, 교육, 지원 등 정보제공 7. 시민공익활동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8. 국가·부문·지역 간 시민사회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증진을 위하여 현황조사 및 통계 구축,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사례 발굴 및 홍보, 교육·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39